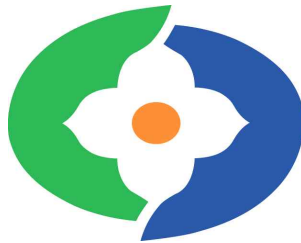


2018년도  
도시건축과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영 동 군

( 기 획 감 사 담 당 관 )

#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 감사내용 》

- 기 간 : 2018. 11. 26. ~ 11. 30. (5일간)
- 대상기관 : 도시건축과
- 감 사 반 : 기획감사담당관 외 5명
- 감사범위 : 2015. 11월부터 추진한 업무전반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실태
  - 보조사업 추진 및 민간위탁 지도점검 등
  - 인허가 등 민원처리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 8건
  - 행정상 조치 : 8건(주의 4건, 시정 3건, 권고 1건)
  - 재정상 조치 : 회수 3건 / 2,688,830원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 수범사례
  -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공공시설물 환경개선 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건물 및 시설물 노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주요 지적사항

연번	부서명	지 적 사 항	처분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합계		총 8건 (도시개발 1, 건축 1, 도시재생 4, 공통 2)	주의 4 시정 3 권고 1		회수 3건 2,688,830원
1	도시개발	◦ 공사 원가계산 부적정	시정		회수 925,000원
2	건 축	◦ 장기 미착공 건축물 관리업무 소홀	주의		
3	도시재생	◦ ○○○○○○○교육 차량임차료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주의		
4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구성 소홀	권고		
5		◦ 강사수당 지급 시 원천(특별) 징수 의무 미이행	시정		회수 52,800원
6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위탁 업무 소홀	주의		
7	도시개발 지역개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부적정	시정		회수 1,711,030원
8	지역개발 도시재생	◦ 민간자본보조사업 정산검사 업무 소홀	주의		

【 일련번호 : 1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925,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사 원가계산 부적정

【현 황】

사 업 명	도급자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일)	도급액(천원)			비고
				당초	변경	정산액	
◎◎◎(△△)★★ ★★★★★공사	☆☆건설 ■□■	17.11.△△	17.11.29 ~ 18.08.31	139,530	138,605	925	

【위법부당사항】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3관 6. 경비에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은 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관 4. 재료비에는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운임 등)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 ▶ 하지만, 도시건축과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의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골재의(구매조건 : 공장상차도) 운반에 소요되는 운반비는 경비항목으로 계상하여 원가계산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 ▶ 2017. 11. 24. ☆☆건설 ■□■과 계약하여 완료된 「◎◎◎(△△)★★★★★공사」의 공사원가 계산 시 골재운반비를 경비항

목이 아닌 재료비 및 노무비, 경비의 각 항목으로 내역서를 잘못 작성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시정조치 없이 준공처리하여 925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도시건축과장은 「○○○(△△)★★★★★★공사」의 공사원가 계산시 운반비 항목을 잘못 산정하여 과잉 지급된 금액 925,000원을 즉시 회수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장기 미착공 건축물 관리업무 소홀

### 【현 황】

○ 장기 미착공 건축물 현황

건축구분	건축주명	대지위치	건축면적 (㎡)	연면적 (㎡)	허가일	착공연기일	주용도
신축	○○○	-	1,400	1,493.31	2015-04-01	2017-03-30	-
신축	☆☆☆	-	517.57	1,735.71	2015-07-17	2017-07-17	-
신축	△△△	-	2,965.57	3,613.32	2016-04-22		-
신축	▲▲▲	-	282.78	997.86	2016-05-11		-

### 【위법부당사항】

○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 건축 등을 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11조 제7항에 의하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나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및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

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3호)에 해당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건축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영동군 건축 조례 제23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관련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아울러,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공사에 착수’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 즉 경계복원측량이나 지반조사, 건물신축도급계약이나 기술지도계약의 체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축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위 법조에서 규정한 ‘공사에 착수’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굴착공사 내지 터파기는 최소한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축조할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7058, 판결, 수원지법 2011. 2. 10., 선고, 2010구합11390, 판결]
- ▶ 그럼에도 도시건축과에서는 ’ 15. 4. 1.부터 ’ 16. 5. 11. 사이에 건축허가 해준 □□□ △△리 ★-★번지 외 1필지 ◎◎◎ 등 4개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 후 감사일 현재까지 44월에서 30월이 경과되었음에도 공사 착수 여부나 공사에 착수하였더라도 공사의 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걱정만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도시건축과장은 건축허가를 득하고 장기간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공사 착수 여부와 공사 착수를 하였더라도 실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건물은 없는지에 대해 적정 조치하기 바라며, 장기간 미착공 건축물이 없도록 이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교육 차량임차료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 【현 황】

#### ○ 예산편성 부적정 현황

회계 년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천원)			적정 예산 편성과목	비고
			본예산	추경 1차	추경 2차		
2016	△△△△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교육 차량 임차료	-	-	1,200	301-09 행사실비보상금	
2018	☆☆☆☆ ☆☆(보조)	201-01.사무관리비 ◎△△△△△△교육 차량 임차료	700			301-09 행사실비보상금	
	○○○○○ ○○○○○ 사업	201-01.사무관리비 ◎ 홍보물 제작 및 차량 임차료	-	1,700	0 (절감)	201-01.사무관리비 ◎ 홍보물 제작 301-09 행사실비보상금 ◎ 교통비	

####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현황

지급일	지급명령 번호	지출예산과목		적요	지출금액 (천원)	적정 편성 및 집행 과목	비고
		세부사업	통계목				
2017-11-15	2017-198	☆☆☆☆ ☆☆(보조)	201-01. 사 무 관리비	□□□□□ 차량임차료 지급	600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일반보상금(301)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며,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는 행사실비보상금(301-09)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민간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 그럼에도 도시건축과는 2016년도 제2회추경 △△△△사업 및 2018년도 본예산 ☆☆☆☆☆(보조)에 △△△△△△교육 차량임차료를 행사실비보상금(301-09)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무관리비(201-01)로 각각 1,200천원과 700천원으로 잘못 편성하였고, 2018년도 ◎◎◎◎◎◎◎◎◎◎사업의 홍보물 제작 및 차량 임차료는 홍보물 제작(201-01.사무관리비)과 교통비(301-09 행사실비보상금)로 구분 편성하여야 함에도 홍보물 제작 및 차량 임차료(201-01.사무관리비)로 부적정하게 편성하였으며,
- ▶ 2017.10.31.일 □□□□□ 차량임차료를 행사실비보상금(301-09)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편성하지 않고 사무관리비(☆☆☆☆☆수당)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도시건축과장은 세출예산 편성과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 및 집행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권고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구성 소홀

【현 황】

○ 개인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현황(2017.08.18.기준)

면적	소계	아파트		다세대,연립		도시형생활		단독 (다중주택 포함)		오피스텔	
		단기	준공공	단기	준공공	단기	준공공	단기	준공공	단기	준공공
총계	414	201		75		102		20		16	
40㎡ 이하	288	127	-	52	-	85	-	12	-	12	-
40㎡ 초과 ~ 60㎡ 이하	89	57	-	12	-	16	-	-	-	4	-
60㎡ 초과 ~ 85㎡ 이하	21	14	-	7	-	-	-	-	-	-	-
85㎡ 초과	16	3	-	4	-	1	-	8	-	-	-

【위법부당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상대적 약자인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강화와 권리보호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5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

표회의는 제44조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 제52조제3항 각 호의 사항(\*1.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제56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제57조).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3조는 “영동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도시건축과는 2007.08.07.일 영동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인을 제작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 감사일 현재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구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도시건축과장은 관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현황과 각종 위원회 통폐합 정비지침을 면밀히 조사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설치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52,8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강사수당 지급 시 원천(특별) 징수 의무 미이행

【현 황】

○ ■■■사업 ▲▲▲ 교육 강사료 지급 현황

[단위 : 원]

지급일	교육과정	교육기간	소득금액	소득세	지방 소득세	실지급액	공제세액
	성명						
2017.06.27.	◇◇◇◇◇◇◇◇◇◇ ◇◇◇◇교육(2차)	2017.06.02. ~ 2017.06.23. (4회)	300,000	0	0	300,000	13,200
	○○○○						
2018.07.19.	☆☆☆☆☆☆□□교육 (1차)	2018.06.14. ~ 2018.07.06. (8회)	600,000	0	0	600,000	39,600
	△△△						

【위법부당사항】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의 3%,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0%), 지방세법상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



【 일련번호 : 6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위탁 업무 소홀

【현 황】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 위탁 현황

수탁자	위탁기간	위탁계획 공고 (여부)	위탁사항 고시 (여부)	교육계획 공고 (여부)	비고
-	2014. 7. 1 ~ 2017. 6. 30.(3년)	부	여	부	
-	2017. 7. 1 ~ 2020. 6. 30.(3년)	부	여	부	

【위법부당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군수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 받고자 하는 자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 받아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위탁 지정서[별지 제17호 서식]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교육 위탁을 받은 자는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 제2항에 규정한 사항(교육의 실시시기, 내용, 시간 및 장소, 실시방법, 절차 및 비용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위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 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교육이수대장[별지 제14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별지 제1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그러나, 도시건축과에서는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 제3항에 따라 교육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 하면서 현황에서와 같이 별도의 교육위탁계획 공고 없이 기존의 수탁자로부터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제출 받아 교육 위탁을 연장하고 위탁사항을 고시하였고, 수탁자로부터 매년 수립된 교육계획을 제출받아 공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이수대장을 보고받지 않는 등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위탁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처분내용】

- 도시건축과장은 향후 옥외광고물 종사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과 공고절차 이행을 위해 교육위탁계획에 대한 공고와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은 연간 교육계획에 대한 공고 절차를 이행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711,03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부적정

### 【현 황】

○ 제압비율 초과 산출현황

사 업 명	도급자	계약일	공사기간	도급액(원)			비고
				당초	변경	정산액	
계(6건)						1,711,030	
★★★(☆☆☆) ◇◇◇◇◇공사	-	17.05.△△	17.06.01 ~ 17.09.12	32,273,000	31,905,000	368,000	도시 개발
~~~~~공사	-	17.07.△△	17.07.26 ~ 17.08.21	66,400,000	65,753,000	647,000	
~~~~~공사	-	18.05.△△	18.05.28 ~ 18.07.25	37,270,000	36,998,000	272,000	
~~~~~공사	-	18.05.△△	18.05.28 ~ 18.07.26	53,470,000	53,397,860	72,140	지역 개발
~~~~~공사	-	18.04.△△	18.04.16 ~ 18.06.14	22,949,890	22,758,000	191,890	
~~~~~공사	-	18.11.△△	18.11.29 ~ 19.01.17	18,840,000	18,680,000	160,000	

## 【위법부당사항】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법령 및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거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식은 도급자관급 미포함 시 “(재+직노)×요율” 로 적용하고, 도급자관급 포함 시 a. (재+직노+도급자관급)×요율, b. (재+직노) ×요율×1.2 중 적은 값을 제경비에 적용하고,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에 따라 포장의 단독발주 공사일 경우 특수 및 기타건설 공사 요율인 1.85%를 적용하고 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갑)에 해당하는 요율 2.93%을 적용하여야 한다.
- ▶ 하지만, 2017. 5. △△ (주)□□건설 ☆☆☆과 계약하여 준공된 「★★★(☆☆☆)◇◇◇◇◇공사」 외 5건에 대하여 설계 시 포장의 단독발주공사임에도 특수 및 기타건설업 요율 1.85%로 적용하지 않고 일반건설(갑) 요율 2.93%으로 과다 적용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시정조치 없이 준공처리하여 1,711,030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도시건축과장은 「★★★(☆☆☆)◇◇◇◇◇공사」 외 5건에 과다 지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11,030원을 즉시 회수하기 바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적정하게 적용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민간자본보조사업 정산검사 업무 소홀

【현 황】

○ 붙임내역 참조

【위법부당사항】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에 따라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해야 하며,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을 확인

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그러나, 도시건축과에서는 붙임 현황에서와 같이 2016 ■■■■ ■■■사업(△△△△)의 2건의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사업완료 이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산검사 없이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 ▲▲▲▲ ▲▲사업 외 11건의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최대 3개월 후에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18 ○○○○ ○○ ○○ ○○○사업(☆☆☆☆사업)의 10건의 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 5개월 전에 사업이 완료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보조사업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 또한, 도시건축과에서는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 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을 별도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자부담이 있는 경우 예치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보조결정을 하고 보조사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 통장 없이 대표자 개인통장 등을 사용하여 보조사업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정산검사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사업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처분내용】

- 도시건축과장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조사업 정산검사없이 보조금액을 확정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관련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개인금융거래내역과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보조금전용통장을 개설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고, 당초 사업계획서와 달리 사업내용이 확장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계획서 변경신청과 보조금 변경교부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보조금 변경교부결정없이 집행된 사업의 정산보고서에 대해서는 보조금 감액을 하는 등 보조금 정산 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조사업 정산검사 현황

연도	사업명	사업량	보 조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 완료일	정산서 제출일	정산 보고일	비고
2015	-	-	-	10,000	97,678	2015-10-26	2015-12-10	2015-12-29	
2016	-	-	-	20,000	19,459	2016-10-11	2016-11-22	217-01-17	
2016	-	-	-	100,000	100,000	2016-09-02	2016-10-24	2016-11-08	
2016	-	-	-	20,000	19,647	2016-09-05			
2016	-	-	-	20,000	19,578	2016-12-05			
2016	-	-	-	5,000	5,000	2016-09-05			
2017	-	-	-	80,000	76,355	2016-12-19	2017-03-13	2017-03-14	
2017	-	-	-	20,000	19,941	2017-02-03	2017-03-09	2017-04-11	
2017	-	-	-	20,000	20,000	2017-09-20	2017-12-01	2018-01-16	
2017	-	-	-	20,000	19,720	2017-09-26	2017-12-01	2018-01-16	
2017	-	-	-	20,000	20,000	2016-12-29	2017-02-23	2017-03-09	
2017	-	-	-	20,000	20,000	2017-07-12	2017-08-10	2017-09-13	
2017	-	-	-	20,000	20,000	2017-10-26		2017-12-21	

연도	사업명	사업량	보 조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 완료일	정산서 제출일	정산 보고일	비고
2017	-	-	-	20,000	20,000	2017-11-22		2017-12-21	
2017	-	-	-	20,000	20,000	2017-11-27		2017-12-21	
2018	-	-	-	122,300	122,300	2018-07-18			
2018	-	-	-	35,800	34,704	2018-08-03			
2018	-	-	-	30,000	29,470	2018-08-20			
2018	-	-	-	30,000	30,000	2018-06-12			
2018	-	-	-	45,400	39,854	2018-06-20			
2018	-	-	-	30,000	29,789	2018-06-08			
2018	-	-	-	29,725	27,965	2018-06-27			
2018	-	-	-	30,000	29,499	2018-06-08			
2018	-	-	-	30,000	30,000	2018-06-29			
2018	-	-	-	65,000	57,158	2018-08-20			
2018	-	-	-	44,000	44,000	2018-07-17			